

보도시점 2025. 7. 29.(화) 17:00 / 배포 2025. 7. 29.(화) 08:30

## 공정위,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크패턴 규제 준수조치 사전 점검 -
- 6개월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범위반시 엄중 제재 방침 강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유형에 대해,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5.8.13.) 간 계도기간 운영

### < 간담회 개요 >

-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15:15 ~ 16:30
- ◆ 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전자거래감시팀 사무관
  - (업 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15개 업체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5.7월)」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동훈 (044-200-4445)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44-200-4454)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	책임자	과 장	박민영 (044-200-4479)
		담당자	사무관	신종영 (044-200-4470)